

과징금·과태료 부과사항

1. 조치 대상 법인명	에스비아이저축은행
2. 과징금 등의 종류	과태료
3. 과징금 등의 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, 제4조의 2 제1항 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2]
4. 과징금 등의 원인	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
5. 과징금 등의 내용	과태료 10,000,000원
6. 기타	결정 통보일 : 2019.11.20